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안내**
-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151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및 송전선로 존재 관련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26.(금요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대상(주택 소유 구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가점제 청약 제한 대상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처분조건)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금요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1.08.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해당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일반1순위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년 9월 5일(월)	9월 6일(화)	9월 7일(수)	9월 8일(목)	9월 16일(금)	9월 27일(화)~30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정보취약계층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천안시 신방동 785-1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주택과-35248(2022.08.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61-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9층 11개동 총1,199세대**
[특별공급 591세대(일반[기관추천] 105세대, 다자녀가구 117세대, 신혼부부 224세대, 노부모부양 34세대, 생애최초 1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소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2000585	01	59.9948A	59A	59.9948	22.0145	82.0093	37.5521	119.5614	32.8883	117	11	11	25	3	12	62	55	5
		02	59.9934B	59B	59.9934	22.5274	82.5208	37.5513	120.0721	32.8876	28	2	2	7	1	3	15	13	1
		03	84.9962A	84A	84.9962	28.8121	113.8083	53.2012	167.0095	46.5938	659	65	65	133	19	67	349	310	25
		04	84.9950B	84B	84.9950	29.2084	114.2034	53.2004	167.4038	46.5931	258	25	25	53	7	27	137	121	10
		05	84.8697C	84C	84.8697	29.2468	114.1165	53.1219	167.2384	46.5244	25	2	2	6	1	2	13	12	1
		06	99.9968	99	99.9968	32.9592	132.9560	62.5904	195.5464	54.8169	112	0	12	0	3	0	15	97	4
합계											1,199	105	117	224	34	111	591	608	46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거래 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 (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구분	공급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10%) 2022.12.13	2차(10%) 2023.06.13	3차(10%) 2023.12.13	4차(10%) 2024.08.13	5차(10%) 2024.12.13	6차(10%) 2025.04.15	잔금 30% 입주지정일
59A	2층	5	96,109,420	188,490,580	-	284,600,000	28,460,000	28,460,000	28,460,000	28,460,000	28,460,000	28,460,000	28,460,000	85,380,000
	3층	5	98,236,930	192,663,070	-	290,900,000	29,090,000	29,090,000	29,090,000	29,090,000	29,090,000	29,090,000	29,090,000	87,270,000
	4층	5	100,330,670	196,769,330	-	297,10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89,130,000
	5,6층	10	102,458,180	200,941,820	-	303,400,000	30,340,000	30,340,000	30,340,000	30,340,000	30,340,000	30,340,000	30,340,000	91,020,000
	7-9층	15	104,619,460	205,180,540	-	309,80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92,940,000
	10-19층	50	105,632,560	207,167,440	-	312,80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93,840,000
	20층이상	27	106,679,430	209,220,570	-	315,900,000	31,590,000	31,590,000	31,590,000	31,590,000	31,590,000	31,590,000	31,590,000	94,770,000
59B	2층	1	93,507,480	184,292,520	-	277,80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83,340,000
	3층	1	95,560,740	188,339,260	-	283,90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28,390,000	85,170,000
	4층	1	97,614,000	192,386,000	-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5,6층	2	99,667,260	196,432,740	-	296,100,000	29,610,000	29,610,000	29,610,000	29,610,000	29,610,000	29,610,000	29,610,000	88,83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검토기준	검토항목	적합여부	비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설계조건 충족여부	적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7조 2항
	의무사항 준수여부	적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보일러(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단위세대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수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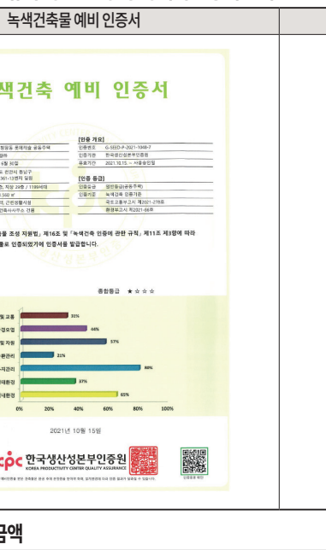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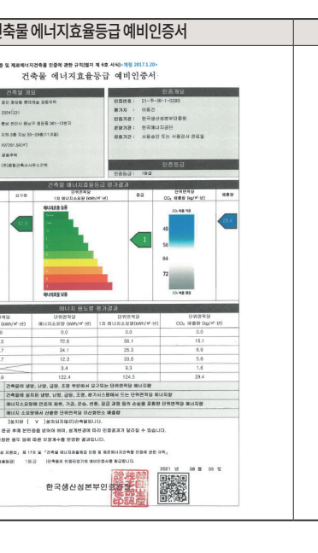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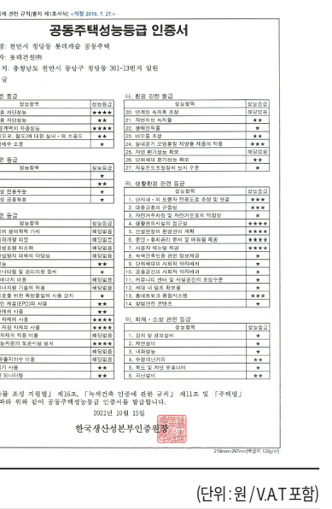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디아이엔지니어링	합자회사 피이피그린
감리금액	3,647,888,200	719,662,514	594,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사
상호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법인등록번호	110111-0014764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사업지 약도	견본주택 약도	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61-13번지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5-16번지	분양문의 : **1533-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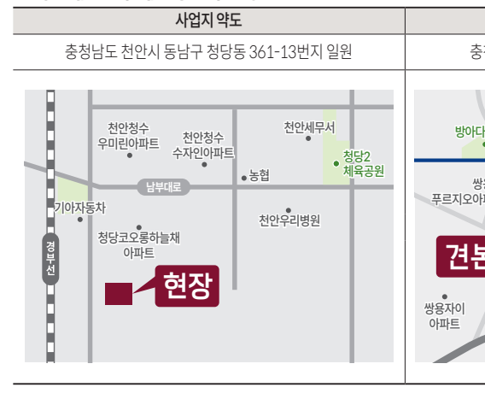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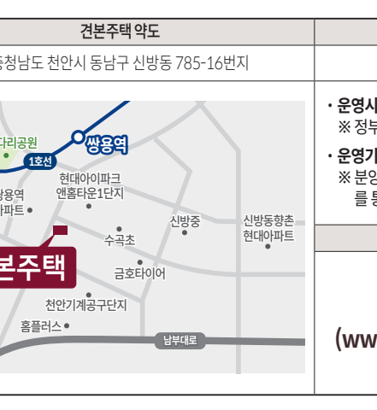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롯데캐슬 (www.lottecastle.co.kr)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